#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83 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:이정문・임광현・복기왕

이상식 • 박정현 • 황명선

이재관 · 김현정 · 조인철

김우영 · 문진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,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 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명칭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명칭 사용금지) 이 법에
	따른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
	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
	<u>할 수 없다.</u>